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919
----------	-----

2016년 3월 9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 의 자 : 권미경 의원 외 15명
- 나. 발 의 일 : 2015년 11월 26일
- 다. 회 부 일 : 2015년 11월 30일
- 라. 상 정 일 : 제266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2016년 3월 4일 상정·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권미경 의원)

가. 제안 이유

- 1) 서울특별시의 빅데이터 활용 및 기반 구축 등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시민 서비스 제공 및 민간 활용지원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빅데이터의 뜻을 정의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해 지역발전에 필요한 정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
- 2) 빅데이터의 수집·분석 및 활용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빅데이터 책임관을 두도록 함(안 제6조).
- 3)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 4) 서울특별시빅데이터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부터 안 제11조까지).
- 5) 빅데이터센터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빅데이터 관련 교육 및 전문인력 양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5조부터 안 제17조까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 사항 없음.

나. 관계부서 : 정보시스템담당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다. 비용추계 : 별 첨

라. 입법예고 결과(2015.12.4~2015.12.11): 의견 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가. 정의(안 제2조)

- 본 제정조례안은 빅데이터의 활용과 기반구축, 서울시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을 통한 빅데이터의 활용 활성화와 공공데이터의 개방 및 이용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안된 것임.
- 빅데이터는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로 그 규모가 방대하고, 생성 주기도 짧고, 형태도 수치 데이터뿐 아니라 문자와 영상 데이터를 포함하는 대규모 데이터”를 말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2조제4호에서는 빅데이터를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환경에서 생성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수치, 문자, 영상 등의 대량 데이터의 집합 및 이로부터 추출한 가치,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과 환경”이라고 정의하였음.
- ※ 현행 법령 등에서 빅데이터의 정의 규정을 살펴보면,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6144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6396호)」 등에서는 빅데이터를 “초(超) 대용량의 정형 또는 비정형의 데이터세트”로 정의하고 있음.
- 빅데이터의 개념은 원래 데이터 형식이 다양하고, 생성 속도가 매우 빨라 새로운 관리·분석 방법이 필요한 대용량 데이터를 의미하였으나, 최근에는 데이터 분석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까지 의미가 확대되고 있는 바,¹⁾ 동 조례안에서 빅데이터에 대한 정의를 “대량 데이터의 집합과 이로부터 추출한 가치,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과 환경”까지 포함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하겠음.

1) 빅데이터(Big Data)의 개념은 최근에는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술과 인력 뿐만 아니라, 빅데이터의 활용효과를 포함하는 것으로 의미가 확대되는 추세임(빅데이터 마스터플랜 2012.11.28)

나.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안 제5조)

- 안 제5조는 공공데이터 관리, 제공 및 이용과 빅데이터의 활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이 규정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법령 및 조례와의 상충을 피하며 상호간의 조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의 적용대상과 다른 자치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적용대상이 서로 중복되거나 모순·충돌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다. 빅데이터 심의위원회 관련(안 제8조 내지 제11조)

- 안 제8조부터 제11조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의 심의·의결 및 빅데이터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자문을 위한 ‘서울특별시 빅데이터 심의위원회’의 설치·구성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즉, 공공데이터 및 빅데이터 활용 관련 심의 등을 위해 ‘빅데이터 심의 위원회’를 설치·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서울시는 정보화 추진에 관한 종합적인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정보화전략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음.²⁾
-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2항에 의거 심의회 등의 자문기관은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³⁾

2)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 제7조(서울특별시 정보화전략위원회) ① 시장은 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정보화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빅데이터 심의위원회와 정보화전략위원회 심의·조정 기능 비교〉

빅데이터 심의위원회 기능	정보화전략위원회 기능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공데이터와 빅데이터 시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공공데이터와 빅데이터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및 분석·점검에 관한 사항 3. 공표 제공대상 이외의 공공데이터 제공 여부 4. 공공데이터제공 중단, 중단사유 해소 및 조치사항 5. 빅데이터등 활용과 제공, 이용 활성화와 관련된 정책 및 제도개선, 민간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빅데이터등과 관련된 주요 사안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보화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중 중요한 사항의 변경 3. 중요한 정보화 정책이나 사업추진의 우선순위 결정 및 조정 4. 그 밖의 정보화의 추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따라서, 공공데이터 및 빅데이터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설치된 ‘빅데이터 심의위원회’가 ‘정보화전략위원회’의 역할·기능에 대한 중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바, 행정기구 소속 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정보화전략위원회’의 분과위원회에서 ‘빅데이터 심의위원회’의 역할·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등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⁴⁾

※ 다만, 본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향후 조례간 일관성을 위해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 중 정보화전략위원회의 기능에 본 조례안의 ‘빅데이터 심의위원회’ 기능을 추가하는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3)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지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화위원회 등의 지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지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지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 제11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전자정부 분과위원회
2. 스마트도시 분과위원회
3. 정보보안 분과위원회

라. 빅데이터센터 설치 및 구성(안 제15조)

- 안 제15조는 빅데이터 활용 및 제공 등을 위하여 ‘빅데이터센터’의 설치·운영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빅데이터센터’는 빅데이터등을 이용한 사회문제 해결 지원, 빅데이터의 분석·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하여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빅데이터센터’의 설치와 관련하여, ‘빅데이터센터’의 업무가 현재 ‘정보기획관’의 ‘통계데이터담당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빅데이터 관련 업무와 유사한 사항이 있는 바,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상호 업무영역의 중첩으로 인한 비효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빅데이터센터와 통계데이터담당관의 빅데이터 관련 업무 비교〉

빅데이터센터의 기능	통계데이터담당관의 빅데이터 관련 업무
1. 서울시가 확보한 빅데이터등의 활용에 시민 참여 활성화	1. 빅데이터 활용 전략계획 수립·조정
2. 빅데이터등을 이용한 사회문제 해결 지원	2. 빅데이터 수집·저장·활용업무 총괄조정
3. 빅데이터등을 이용한 선제적 과학적 행정 지원	3. 빅데이터 활용 지침에 관한 사항
4. 빅데이터등을 기반의 시민 맞춤형 서비스 사업 지원	4. 빅데이터 활용 정책과제 발굴 및 기획
5. 빅데이터등을 서비스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지원	5. 빅데이터 분석·융합 및 해결책 도출
6. 빅데이터등의 분석과 가공, 전문인력의 양성	6.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 개발 및 제공
7. 빅데이터등의 활용 등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연구	7. 빅데이터 공유활용 플랫폼 구축 및 운영
8. 그 밖에 빅데이터등의 활용에 필요한 사무	8. 민관 빅데이터 활용협의회 구성 및 운영
	9. 빅데이터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재석위원 6명, 전원찬성).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빅데이터의 활용과 기반구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서울특별시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빅데이터의 활용 활성화와 공공데이터의 개방 및 이용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2.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란 소프트웨어로 데이터의 개별내용 또는 내부 구조를 확인하거나 수정, 변경, 변환, 추출 등 가공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3. “제공”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가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 또는 개방하는 것을 말한다.
4. “빅데이터”란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수치, 문자, 영상 등의 대량 데이터의 집합과 이로부터 추출한 가치,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과 환경을 말한다.
5. “빅데이터등”이란 서울시에서 사용가능한 제1호와 제4호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시(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포함한다)와 서울시가 설립하거나 출자·출연한 공사·공단, 법인 및 기관(이하 “산하기관”이라 한

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기본원칙) 서울시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서울시는 이용대상의 구분 없이 누구든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공공데이터에 관한 접근과 이용에 있어서 평등의 원칙을 보장하여야 한다.
2. 일반에게 공개된 공공데이터는 법 제28조제1항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접근제한 혹은 일방적인 차단 등 이용저해행위를 금지한다.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법 제17조제1항 각호 및 법 제28조제1항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데이터의 영리적 이용인 경우에도 이를 금지 또는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공공데이터 관리, 제공 및 이용과 빅데이터의 활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빅데이터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서울시의 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빅데이터등의 수집·분석 및 활용, 제공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하도록 빅데이터책임관을 둔다.

1. 빅데이터등의 시책의 총괄조정 및 지원
2. 빅데이터등의 시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계획 등과의 연계·조정
3. 빅데이터등의 관리·수집·저장·분석·제공 및 활용 업무 총괄 및 지원
4. 빅데이터등의 민간활용 촉진에 관한 사무
5. 데이터 기반의 사회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추진체(이하 ‘빅데이터센터’라 한다)의 설치·운영 및 위탁

- 6. 빅데이터등의 수집·저장·분석·활용단계별 개인정보 보호 및 품질관리, 평가
- 7. 그 밖에 빅데이터등과 관련된 사무

- ② 빅데이터책임관은 정보기획관으로 하며,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을 겸한다.
- ③ 빅데이터책임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소관업무 부서의 장을 보좌관으로 두고, 그 임무를 수행토록 한다.

제7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매년 법 제8조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공공데이터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7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행정자치부 장관이 통보한 작성지침을 고려한다.

- ② 시장은 매년 빅데이터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제2장 서울특별시 빅데이터 심의위원회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법 제8조 및 빅데이터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서울시에 ‘서울특별시 빅데이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원회는 서울시의 공무원과 시의원 총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넘지 못하며, 전문분야와 성별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1. 서울시 공무원
- 2. 서울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 3. 전문가, 교수 등 빅데이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서울시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통계데이터담당관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공데이터와 빅데이터 시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공공데이터와 빅데이터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및 분석·점검에 관한 사항
3.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공포 제공대상 이외의 공공데이터 제공 여부
4.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제공 중단, 중단 사유 해소 및 조치사항
5. 빅데이터등 활용과 제공, 이용 활성화와 관련된 정책 및 제도개선, 민간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빅데이터등과 관련된 주요 사안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제3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⑤ 위원장은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안건 등 필요한 경우 위원회 심의 사안에 대하여 전자·서면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제10조제4항에 위반한 경우

제3장 빅데이터등

제12조(빅데이터등 활용기반 구축) ① 시장은 빅데이터등을 수집·활용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 등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시스템은 서울시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필요한 통계자료의 분석지원과 공공 또는 민간부문에서의 요청시 시스템 사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빅데이터등의 수집·관리) ① 빅데이터책임관이 시스템 운용 등에 필요한 빅데이터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시의 빅데이터등을 생성·관리하는 부서의 장과 산하기관의 장(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에게 요청한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빅데이터등의 자료 제공을 할 수 없는 소관부서의 장은 그 사유를 서면으로 빅데이터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빅데이터책임관은 빅데이터등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고, 적법하게 확보한 빅데이터등을 총괄관리 및 효율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④ 빅데이터책임관은 소관부서의 장 등에게 제공받은 빅데이터등에 포함된 개인

정보를 보호할 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며, 저작권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활용하고, 빅데이터등의 제공을 위한 저작권 확보에 노력한다.

제14조(빅데이터등의 활용) ① 시장은 교육·교통·의료 분야 등에서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통 등의 각 분야에서 정책수립시 빅데이터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③ 민간영역의 빅데이터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에 의해 개인 정보가 보호되고 있거나, 「저작권법」 등에 의해 권리가 보호되고 있는 경우 이를 해소하고 빅데이터센터나 시스템에서 활용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데이터의 서비스 제공과 활용은 시행계획에 포함 되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빅데이터센터의 설치 및 운영·관리 위탁) ① 시장은 빅데이터센터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빅데이터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시가 확보한 빅데이터등의 활용에 시민 참여 활성화
2. 빅데이터등을 이용한 사회문제 해결 지원
3. 빅데이터등을 이용한 선제적 과학적 행정 지원
4. 빅데이터등을 기반의 시민 맞춤형 서비스 사업 지원
5. 빅데이터등을 서비스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지원
6. 빅데이터등의 분석과 가공, 전문인력의 양성
7. 빅데이터등의 활용 등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연구
8. 그 밖에 빅데이터등의 활용에 필요한 사무

③ 시장은 빅데이터센터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빅데이터센터의 위탁받은 자는 운영·관리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빅데이터센터의 운영·관리를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의 사항은 이 조례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제4장 보 칙

제16조(품질관리) ① 빅데이터책임관은 제공되는 빅데이터등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품질 진단 등의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빅데이터등의 제공과 이용활성화를 추진할 때 민간협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관련 기업 및 단체, 개인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빅데이터등의 제공과 관련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빅데이터 산업의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빅데이터 산업 및 활용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17조(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범위 등) ① 시장은 서울시에서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시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
2.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술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공공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공공데이터는 서울시 홈페이지나 빅데이터센터 등을 통해 제공한다.

④ 제공되는 공공데이터의 내용에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이나

개인정보를 인식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⑤ 빅데이터책임관은 제1항 각호의 내용을 제외하고 공공데이터 외의 빅데이터 등을 제공하는 경우 공공데이터 제공대상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18조(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① 시장은 공무원들의 데이터 역량 강화를 위하여 빅데이터등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육기관에 교육과정의 개설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빅데이터등의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빅데이터등의 교육과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빅데이터등의 교육과 전문인력 양성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문교육기관·관련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평가)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서울시와 산하기관에 대하여 빅데이터 등의 활용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빅데이터등의 활용 및 정책지원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기업·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20조(비밀보호를 위한 조치) ① 시장은 빅데이터등의 활용을 위하여 자료 등을 제공할 때에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빅데이터등의 활용 사무를 관련 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경우에 사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의 의무를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비용산정 기준 등) ① 시장은 제17조에 따라 이용자에게 빅데이터등을 제공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비용을 부담 시킬 수 있다.

1. 빅데이터등의 제공에 드는 전자기록매체 비용 등 일반경비

2. 제3자 권리 정보가 포함된 빅데이터등의 제공에 대한 정당한 권리이용 비용

② 시장은 빅데이터등의 제공하는 드는 비용이 제1항 각 호의 경우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용목적, 빅데이터등의 양, 제공기간 및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빅데이터등을 제공받는 자와 협의를 통하여 비용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비용은 서울시 수입증지 등으로 납부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